

#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페이지
1. 2014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재무과	1

( 2014. 3. 31)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 전문위원 이진표 ]

## 1. 안 건 명

-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4년 3월 26일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 3. 의안 회부일자

- 2014년 3월 27일

## 4.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5.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설치대상인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6. 주요내용

- 절대 부족한 관내 대표 도서관 확충
  - 서울시 25개 자치구 대표도서관 면적 비교시 마포구는 20위에 불과 (마포중앙도서관 신축 경우에도 9위에 해당)
  - 특히 구립도서관은 서강동주민센터 45층에 위치한 마포구립서강도서관 1개소 뿐이며, 면적도 1,134㎡로 협소
- 공공 교육시설 건립을 통하여 교육환경 개선욕구 충족
  - 마포구는 사설교육학원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값비싼 사설학원에 갈만한 경제적 여유도 없어 공공교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큼
  - 마포구 내 청소년 관련 시설은 시립 청소년수련관 1개소, 구립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로 수용인원 1,500명에 불과
  - 사업부지는 주거밀집지역으로 대상지 반경 1.5km 내 13개 학교가 위치해 있어 청소년교육시설 건립 적지
  - 또한, 절대부족한 주택가 주차장 수요 충족을 위한 복합시설 건립 필요
- 기 확보된 구유지에 시설 건립으로 구비 투입 최소화 등 효율적 추진
  - ※ 대지 매입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관내에 위치한 한국중부발전(주)에서 시설 건립비 소요액의 30% 인 130억원 지정기탁으로 투자재원 확보

## 7. 검토결과

- 동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설치대상인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를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 주된 내용은 구(舊)마포구청사의 건물 중 본관 건물(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7,207.2㎡)을 철거한 후, 동일부지내에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를 건립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 비교 상대적으로 부족한 도서관을 확충하고, 청소년교육센터를 통해 구민의 교육 환경 개선 욕구를 충족시키는 등 마포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2014. 3.21 안전행정부의 중앙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결과가 회신됨에 따라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심사결과, 1) 시설 완공 후 유지관리 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구체적인 수익시설 유치방안을 강구, 2) 국비 지원계획 재협의 후 지원 곤란 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규모 축소, 3) 실시설계 완료 후 계약체결 이전에 2단계 심사를 이행 하라는 조건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 총사업비가 42,682백만원(국비 5,335백만원, 시비 12,601백만원, 구비 11,746백만원, 발전소지원금 13,000백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해당부서에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시에 도출하여 신속히 해결하는 등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 계획

### ○ 사업개요

- 위 치 : 마포구 성산로 128(舊 마포구청사 부지)
- 사업규모 : 지하2층 / 지상6층, 연면적 17,414m<sup>2</sup>
- 사업기간 : 2014. 4. ~ 2017. 12.

소재지	지목	토 지		건 물		건축비	토 지 소유자
		공부면적	규모	용도			
마포구 성산로 128	대지	13,434m <sup>2</sup>	계 : 17,414m <sup>2</sup>	도서관, 교육센터 및 주차장		42,682 백만원	마포구
			지하1층:5,000m <sup>2</sup>	사무실, 부설주차장			
			지상2층:5,000m <sup>2</sup>	사무실, 공영주차장			
			지상1층:1,250m <sup>2</sup>	청소년카페, 강당, 방과후 돌봄센터 등			
			지상2층:1,250m <sup>2</sup>	교육비전센터			
			지상3층:1,250m <sup>2</sup>	영어체험센터, 사무실 등			
			지상4층:1,222m <sup>2</sup>	도서관			
			지상5층:1,222m <sup>2</sup>				
			지상6층:1,220m <sup>2</sup>				

### ○ 총사업비 내역(단위 : 백만원)

계	국비	시비	구비	발전소기금
42,682	5,335	12,601	11,746	13,000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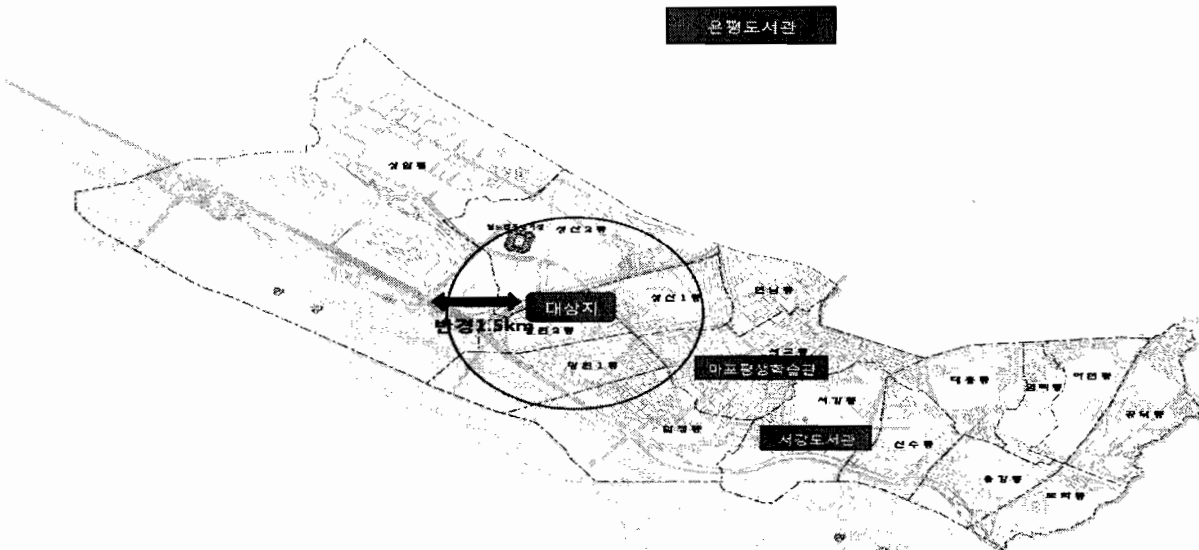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					비고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42,682			8,000	14,893	9,893	9,896	
국비	5,335				1,778	1,778	1,779	도서관 건립비의 40%
시비	12,601				4,200	4,200	4,201	
시비	도서관 보조금	1,078			359	359	360	500평 이내 도서관 건립비 보조
	주차장(특)	3,180			1,060	1,060	1,060	건립비 보조
	특별교부금	8,343			2,781	2,781	2,781	특별재정 수요 지원
구비	11,746				3,915	3,915	3,916	
구비	일반회계	7,840			2,613	2,613	2,614	중기재정계획 반영
	주차장(특)	3,906			1,302	1,302	1,302	
발전소지원금	13,000			8,000	5,000			지정기탁금

○ 향후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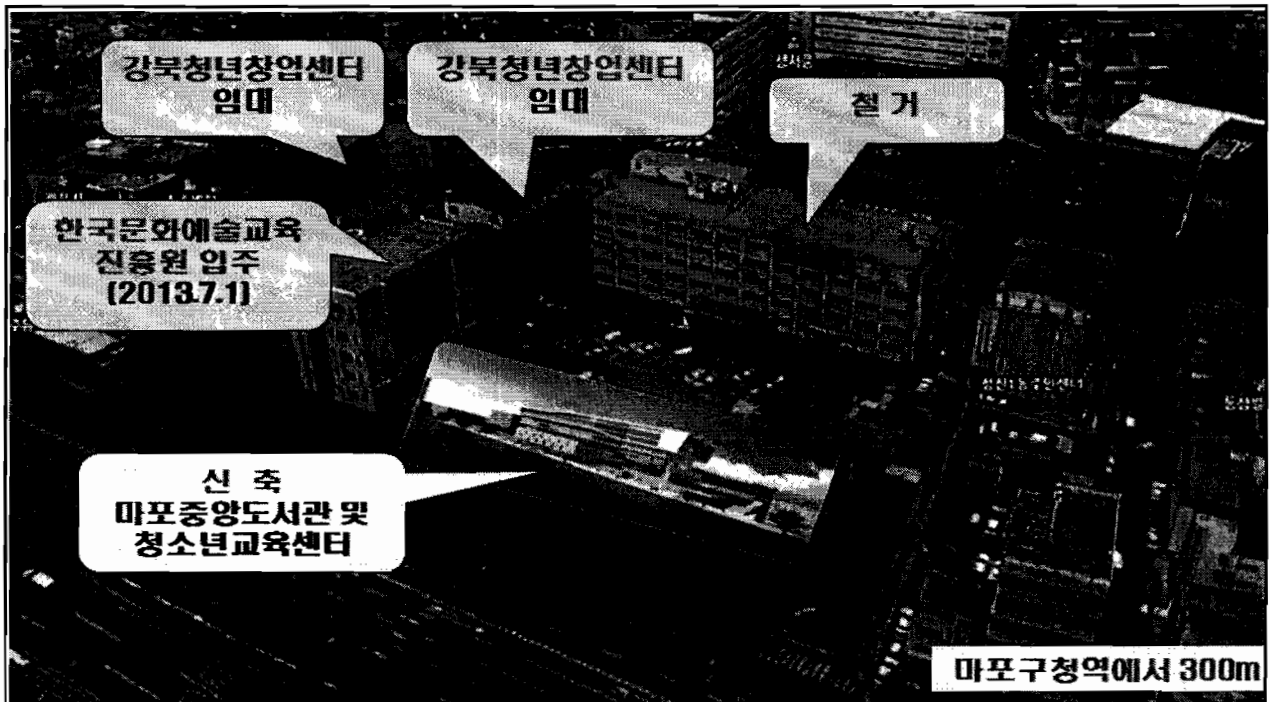
구분	계획일정	비고
공유재산심의회 상정	2014. 3월	
구의회 구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2014. 4월	
광역특별회계 예산 신청	2014. 4월중	
건립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	2014. 4월중	
설계경기 공모	2014. 5월중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014. 8월 ~ 12월	
공사발주 및 착공	2015. 1월	
공사완료	2017. 12월	

#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부지 현황사진

## ○ 위치도



## ○ 현황사진





# 2014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11-1)

( 단위 : m<sup>2</sup>, 천원 )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 득	계	토지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1	1	42,682,000				1	1	42,682,000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1	1	42,682,000				1	1	42,682,000	
처 분	계	토지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 201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11-2)

( 단위 : m<sup>2</sup>, 천원 )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 목	소 재 지	수 량				
001	건물	마포구 성산로 128 (구 마포구청사)	1 (17,414m <sup>2</sup> )	42,682,000 (건축비)	2015. 1월 착공 ~ 2017. 12월 완공	신축	

# 관계법령 및 근거

## [ 지방자치법 ]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36조(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39조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무상(無償)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전문개정 2008.12.26]